

2019년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<청년업> 모집공고

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가업승계, 덕업일치, 부업개발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통해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직업 관련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.

저성장시대와 급변하는 직업생태계 속에서 서울청년들이 다양한 삶의 경로를 탐구하여 새로운 사회·경제적 가치와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청년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□ 개요

- 사업명 : 2019년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<청년업>
- 사업기간 : 2019년 6월 1일 ~ 11월 30일
 - ※ 사업예산은 지원금 교부일로부터 10월 20일까지 사용가능
- 사업대상 :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개인 및 단체 만 19세 ~ 39세
 - ※ 단체의 경우 대표자, 단체구성원 과반수 이상 만19세 ~ 39세
- 지원범위 :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위한
직업실험 지원
- 지원내용 : 청년 직업실험 추진을 위한 사업비, 운영비, 인건비,
홍보비 지원
- 지원규모 : 500 ~ 1,000만 원 / 30인(단체) 내외
 - ※ 2019년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지원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

□ 접수 및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19년 4월 8일(월) ~ 4월 25일(목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up@youthhub.kr)

※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 (2019청년업)지원신청서_성명 또는 단체명
 ※ 지원신청서는 hwp파일만 접수 가능(선택 제출 파일에 한해 ppt, avi 등 제출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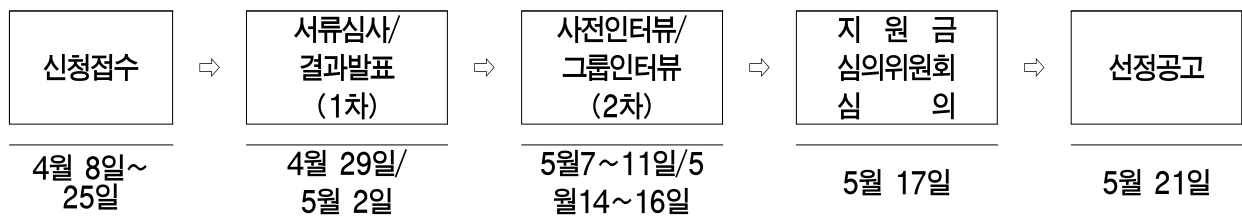
○ 제출서류

- 2019년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<청년업> 신청서1부

※ 예산계획서는 지원금 예산편성 기준(별첨 1)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

□ 심사

○ 심사절차



※ 추진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○ 심사기준

항목	세부내용	배점
사업수행 역량	- 지원사업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 -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 및 필요성 - 사업수행 관련 유관활동 및 경험 - 사업추진 자원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	30점
사업계획	- 사업의 실현 가능성 - 추진일정의 적절성 - 사업 단계별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-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	45점
기대효과	- 사업의 지속가능성 - 사업수행의 파급효과	25점

※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<청년업> 심사표 별첨

○ 1차 심사

- 일시 : 2019년 4월 29일(월)
- 심사방법 : 지원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심사

○ 2차 심사

: 1차 선정자(단체) 대상으로 사전 및 그룹인터뷰 진행

• 사전인터뷰

- 일시 : 2019년 5월 7일(화) ~ 11일(토)
- 심사방법 : 일대일 인터뷰
- 장소 : 서울특별시 청년허브

※ 가업의 경우 지원자의 개별 사무실 및 작업실에 방문하여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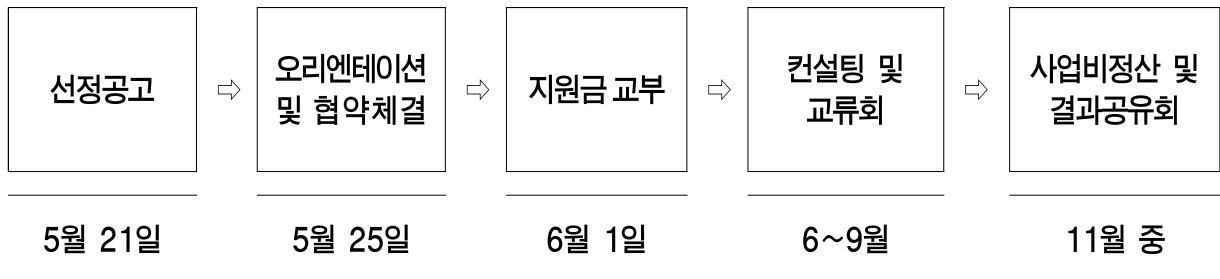
• 그룹인터뷰

- 일시 : 2019년 5월 14일(화) ~ 16일(목)
- 심사방법 : 개별 PT발표 및 그룹(3~4명/단체) 인터뷰
- 장소 : 서울특별시 청년허브

□ 선정결과 공고

- 선정공고 : 2019년 5월 21일(화)
- 공고방법 :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, 개별 통보
- 내용
 - 2019년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<청년업> 선정 결과 안내
 -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 안내(일시/제출서류 등)
 -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 요청

향후 일정



※ 상세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○ **지원금 교부 및 집행 : 2019년 6월 1일(금)**

-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
- 사업비 집행은 『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근거하여,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<청년업>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

○ **중간보고 : 상반기 활동 현황 공유 ('19년 8월 중)**

○ **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: '19년 11월 1일까지**

-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시 실험기록,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

유의사항

-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응모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
- 최종 선정자 중 선정포기 또는 선정취소가 발생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재선정함
-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
 -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
 -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
-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원금으로 제작된 유·무형적 결과물은 판매할 수 없음
 - ※ 사업 종료 후 결과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에만 판매 가능함
-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<청년업> 최종 선정자는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로 참석 하여야함
 - 오리엔테이션, 사전교육, 컨설팅 및 교류회, 중간·결과공유회 등

문의

-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청년자원팀 T. 070-4432-6183/6197 E. up@youthhub.kr

[별첨1] 지원금 예산편성 기준

지원금 예산편성 기준

1. 사업비 항목

항목	지급유형
사업비	재료비, 임차비 등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
운영비	회의비, 여비, 도서구입비. 사업추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
전문가비	사업진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 ※내부 구성원 불가
홍보비	인쇄 및 제작 등 홍보 관련 비용

2. 예산 항목별 편성기준

1) 사업비

구분	편성기준	비고
물품구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-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. 컴퓨터, 냉장고, TV 등 자산성 물품 편성 불가 	
다과비 및 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행사, 강연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및 식비에 소요되는 비용 - 각종 행사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, 내부 구성원으 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예산 편성 불가 - 다과비와 식비는 한 행사에서 동시에 편성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과비 기준 : 1인 1회 3,000원 - 식비 기준 : 1인 1회 8,000원
제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작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- 판매 또는 수익활동을 위한 제작 불가 	300만원 이상 계약 체결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
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- 장비, 차량, 행사장, 작업장, 숙박 등 -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 등 	

※ 물품구입비, 임차비, 재료구입비 등이 지원자(단체 대표 및 임직원)또는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 될 수 있음

※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확보는 임대가 원칙이며 에어컨,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

- **비소모품(자산)이란?**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, PC를 비롯한 전자기기,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
- **소모품이란?**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이 물품으로 필기구, 문구, 인쇄 및 용지류, 청소용품, 주방용품, 피복류, 일회성 용품 등

※ 조달청 물품분류 지침

비소모품	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. 단,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(예시 :1백만원)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
소모품	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, 유류 등 -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, 사무용 소모품, 공구 등 -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(생산)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, 건축자재 등 -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(예시 : 10만원) 미만인 소액의 물품

2) 운영비

구분	편성기준	비고
회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수행을 위한 회의 진행 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및 식비에 소요 되는 비용 - 다과비와 식비는 동시에 편성할 수 없음 - 1회 10만원 이상(10인 이상)일 경우 회의 사진 제출 - 회의비 사용은 1일 1인당 총액 10,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	회의비 기준 : 1인 1일 10,000원
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, 식비 등 경비 ※ 시내 : 출장 장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인 경우 ※ 시외 : 출장 장소가 서울특별시 관외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내여비 : 정액지급 (1인 1일 / 10,000원) - 시외여비 : 실비정산 (식비: 1인 1일 20,000원 이내 숙박비: 광역시 1박 60,000원, 그 외 지역 1박 /50,000원)
도서구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구입비 - 업무 참고용 도서만 가능, 개인 도서 구매 불가 	도서구입비 기준 : 1권 15,000원 이하

※ 여비는 사업수행 위한 지원자(단체)의 출장비용으로만 편성가능 하며,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부 구성원 외 인원에게 지급 할 수 없음

3) 전문가비

구분	편성기준			
강사비	가급	300,000원/시간	1인 기준 1회 당 최대 60만원 이내로 지급	
	나급	200,000원/시간		
	다급	100,000원/시간		
	특별2급	1시간 : 300,000원 / +1시간 : 200,000원		1회 최대 인정 : 2시간
	일반1급	1시간 : 230,000원 / +1시간 : 120,000원		
	일반2급	1시간 : 120,000원 / +1시간 : 100,000원		
	강사비	<p>가급 : 기업/공공단체(NGO, NPO, 공공의제 연구소 등) 교육기관 대표 나급 : 각 분야 10년 이상 전문가 ‘가’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, 단체의 임원 및 팀장 이상 중간관리자 다급 : 각 분야 10년 이하 활동가 또는 청년그룹 ‘가’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, 단체의 실무자</p> <p>특별2급 : 언론사 대표,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장, 단과대학장(급), 교수 이상, 차관(급), 광역지방의회의원, 기초자치단체장, 정부투자기관장, 특별행정기관장 일반1급 : 대학(교) 교수, 판검사, 언론사 임직원,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임원,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, 4급 이상 공무원 일반2급 : 대학(교) 전임강사,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또는 연구원, 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, 5급 이하 공무원</p>		
자문료	1회 1~6시간 이내 : 100,000원 / 1회 12시간 이내 : 200,000원			
원고료	12,000원/A4 1면(12포인트 800자 기준) 파워포인트 작성 시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지급제외 : 제목, 목차, 간지, 강사비B(공직자)			
번역료	A4 1면(12포인트 800자 기준) 가 그룹 : 영어, 불어, 스페인어 나 그룹 : 일본어, 중국어(간체/번체) 다 그룹 : 특수, 가공, 기타 언어	외국어 → 한국어	가 : 32,000원 나 : 20,000원 다 : 38,500원	
		한국어 → 외국어	가 : 64,000원 나 : 40,000원 다 : 77,000원	
		영어	1시간까지 : 600,000원	
			6시간까지 : 900,000원	
			6시간초과 : 150,000원/시간	
			1시간까지 : 700,000원	
일본어	6시간까지 : 800,000원			
	6시간초과 : 100,000원/시간			
통역료	영어, 일어 동시통역 기준 자격 : 해당언어 통역경력 3년 이상 그 외 언어는 외대 통역요율표 참고			
디자인비	• 사업수행 필요한(홍보물을 제외) 디자인 비용 - 작업일 기준으로 지급 : 참여일수 x 단가 (단가 1일 최대100,000원)			
일용인건비	1) 기본시간 : 시간당 10,140원 (일 81,120원 / 9시간 기준) 휴게시간 1시간 포함금액임(4시간마다 30분 휴식 부여해야 함) 2) 초과추가시간 : 시간당 15,210원 (통상 x 1.5배) 9시간 초과 시 추가 지급됨 3) 심야추가시간 : 시간당 초과추가시간 금액 + 5,070원 심야시간 : 22:00 ~ 06:00 ※서울시 생활임금 19년도 기준 적용			

4) 홍보비

구분	편성기준	비고
홍보물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홍보물 인쇄 및 제작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작업체에 디자인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, 디자인비는 총 금액의 최대 30%까지 책정할 수 있음 •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회성 디자인만 제작 가능 - 건당 최대 100,000원까지 책정 가능 <p>※ 홍보물 : 책자, 리플렛, 현수막, 배너, 포스터, 엽서, 굿즈 등</p>	예산총액의 최대 20%까지 사용할 수 있음

5)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

-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전화 설비, S/W 프로그램 등 **자본적 경비**
- 지원자 또는 구성원의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 및 월세, 사무용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, 인증서 발급비, 차량유지 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, 각 종 수수료 등 **일반운영비**
- 연구기관,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**용역성 경비**
- 기부금(불우이웃돕기성금 등), 시상금, 상품권, 기념품 등 **현금성 지출경비**
- 총회, 대의원회의,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
- 유흥비, 예비비, 경조사비 등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**간접 경비**

[별첨2 국외출장심사기준]

국외출장심사기준

구 분	심사 내용
출장의 필요성	지원사업 수행 이외의 목적 및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제한하고,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 함
	여행출장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,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·단일화
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	출장 목적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가·기관으로 제한
	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
출장자의 적합성	출장자의 담당업무가 국외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, 귀국 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
	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,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계획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함
출장기간의 적정성	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
출장시기의 적시성	출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·공휴일·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
	휴가철·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
출장경비의 적정성	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·체재비 등의 과다 또는 중복지원 여부

[별첨3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<청년업> 심사표]

지원자명			
심사영역	심사지표	배점	심사결과 점수
사업수행 역량 (30점)	1. 지원사업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	10	
	2.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 및 필요성	10	
	3. 사업수행 관련 유관활동 및 경험 ※ 단순 친목활동, 단발성 활동 등 평가제외	5	
	4. 사업추진 자원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	5	
사업계획 (45점)	5. 사업의 실현 가능성 ▪ 사업 목표 및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	15	
	6. 추진일정의 적정성 ▪ 단계별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며 사업기간 내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	10	
	7. 사업 단계별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	10	
	8.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	10	
기대효과 (25점)	9. 사업의 지속가능성 ▪ 직업 실험 이후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직업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	15	
	10. 사업수행의 파급효과 ▪ 사업수행의 결과가 청년의 직업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	10	
총 계		100	
심사위원 의견			